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제3122호             |
| 의결연월일 | 2026. . .<br>(제 회) |

|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|--|
| 의<br>결<br>사<br>항 |  |
|------------------|--|

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의 자     | 고성군의회의장      |
| 제 의 연 월 일 | 2026. 7. 22. |

##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|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3122호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의연월일: 2026. 7. 22.

제 의 자: 고성군의회의회장

### 1. 제의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·기금결산 종합심사를 위한 고성군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.

### 2. 처리안건

- 고성군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·기금결산 종합심사

### 3. 위원임기: 선임일로부터 2028. 6. 30.까지

### 4. 위원 선임내역(안): 10명

| 소속위원회   | 위 원 명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기획행정위원회 | 손상재, 윤정애, 최상림,<br>이우영, 양애정 |     |
| 산업경제위원회 | 김석한, 김원순, 우정욱,<br>이승환, 이은호 |     |

## 【관 계 법 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64조(위원회의 설치)**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# □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

**제7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**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, 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(기금운용변경계획안)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<삭제 2022. 1. 13 조 2709>

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